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해촉 조항의 신설 등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조문의 자구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(안 제4조).
- 나. 고문변호사 해촉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2).
- 다.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1조 내지 제3조, 제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산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5. 25 ~ 6. 1(7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부산광역시사하구” 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로 한다.

제2조중 “구청장” 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중 “구(소속기관 포함)” 를 “구(구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 로 하고, 동항제4호를 삭제 한다.

제4조본문중 “1년” 을 “2년” 으로 하고, 동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
다만,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4조의2 (해촉)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

제6조제1항중 “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” 을 “「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」으로 하고,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“범위내” 를 각각 “범위안” 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 (목적)</b>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 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 (목적)</b> -----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2조 (위촉)</b>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조 (위촉)</b>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3조 (직무)</b>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1. 구(소속기관 포함)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</p> <p>②(생략)</p>	<p><b>제3조 (직무)</b> ----- -----</p> <p>1. 구(구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----- 2.~3. (현행과 같음) 4.&lt;삭 제&gt;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조 (임기)</b>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 (임기)</b>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결 시 까지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b>제6조 (소송비용등) ①</b>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<u>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</u>에 준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의2 (해촉)</b>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3.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</li> </ol> <p><b>제6조 (소송비용등) ①</b>----- ----- 「<u>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</u>」----- -----</p> <p>②----- 범위안 -----</p> <p>③----- 범위안 -----</p>